제 2 2 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(2017.11.13.)

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 사 보 고 서



총무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	1
2	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3	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4	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	7
5	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0
6	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12
7	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	14
8	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23
9	거창승강기 R&D센터(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) 출연안	25
10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	28
11	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	30

의안번호 제2017 - 114호

_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-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10. 23.

나. 발 의 자: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(9명)

(공동발의: 이홍희, 변상원, 최광열, 김향란, 표주숙, 강철우,

박희순, 이성복 의원)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3.

2. 제정이유

○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세무사 위·해촉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.

- 가. 조례의 목적, 위·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마을세무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4조)
- 라.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. 제6조)
- 마.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, 제8조)
- 바.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9조)

- 가.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서민층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
- 나. 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17호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개정이유

○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,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.

- 가.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.(안 제3조제6호)
 - 다른 시·군·구에 **3년이상**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
 - ⇒ 다른 시·군·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
 - <u>1개월 이상</u>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
 - ⇒ <u>6개월 이상</u>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
- 나.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 근거 마련함.(안 제20조 제1항제8호)
 - 학기별 10만원(재학 중 최대 4회)

다.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제2항)

- 지원내용: 2명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
 - 전입정착금: 15만원이내
 - 귀농세대 영농정착금: 250만원이내
 - 빈집정비지원: 150만원이내
 -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: 1/2지원이내
 - 쓰레기종량제봉투: 20리터 22매이내
 - 문화예술관람권: 2장이내

- 가. 농촌인구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귀촌, 귀농 등 인구 전입이 절실한 현실로 전입세대 및 전입세대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18호

─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─ ─ **심 사 보 고 서** ─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개정이유

○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소신 있는 업무 추진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.

- 가. 조례 제명을 변경함.
 -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⇒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
- 나.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에 법무법인 추가함.(안 제2조)
 - 변호사 ⇒ 변호사 및 법무법인
- 다. 정당한 공무수행 중 제기된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방어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.(안 제7조)
 - 지원 대상·절차·액수·요건. 반납 기준
- 라.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함.(안 제2조·제3조·제5조·제6조)

- 가.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권리신장으로 형사 또는 민사사 건이 증가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
- 나. 사건의 다양화로 개인 변호사보다 분야별 전문가가 있는 법무 법인을 고문변호사로 법위을 확대하고,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_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__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___ -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제정이유

- 조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나 군 행정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음.
- ○「정부조직법」개정안이 시행(`17.7.26.)되어 행정자치부, 미래 창조과학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와 군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·비능률성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함.
 - ※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

- 가.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함(안 제1조~제11조)
 - 11개 조례 16건
 - 행정자치부 ⇒ 행정안전부

- 안전행정부 ⇒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
- 중소기업청 ⇒ 중소벤처기업부
- 미래창조과학부⇒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소방방재청 ⇒ 소방청
- 산업자원부 ⇒ 산업통상자원부
- 교육과학기술부⇒ 교육부
- 내무부 ⇒ 행정안전부

나. 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함(안 제12조·제13조)

- 3개 조례 6건
- 시설관리사업소 ⇒ 체육시설사업소
- 주민생활지원실 ⇒ 복지정책과
- 건설교통과 ⇒ 경제교통과
- 문화관광과 ⇒ 평생교육센터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가. 「정부조직법」개정으로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조례에 인용된 중앙부처 명칭을 바르게 변경하고
- 나. 「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으로 변경된 실·과 사업소 등의 명칭을 바르게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경제적·비능률성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한 것으로
- 다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위임법명을 변경하고,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.

- 가.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 - ○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 - ⇒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3조)
 - 민원봉사과장 ⇒ 민원봉사실장
- 다.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함(안 제4조제2항)
- 라.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(안 제10조)
- 마. 운영세칙을 정함(안 제12조)

- 가.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제명을 개정,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, 거창군 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,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21호

─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─ **─ 삼 사 보 고 서** ─ ─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제22조 단서 '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.' 규정에 따라 의무부담조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- 가.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
 - 관급공사에 대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등 의무 부과 조항 삭제(구 제4조제4항·제5항)
 - 임금지급 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경우 부진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 새로운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(구 제11조)
- 나. 계약대상자의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(구 제4조제 1항·제3항, 제5조, 제12조)

다.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신설함(안 제6조) 라. 문장 정비 및 용어 순화 함.

- 가.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은 신설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
- 나.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29호

_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_ - 심 사 보 고 서 _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

Ⅱ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

1. 제안이유

○ 2017년 읍·면 순방 시 북부권역 119안전센터 주민건의 지원요구 및 거창소방서의 협조요청에 따른 웅양권역 119 안전센터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함.

2. 취득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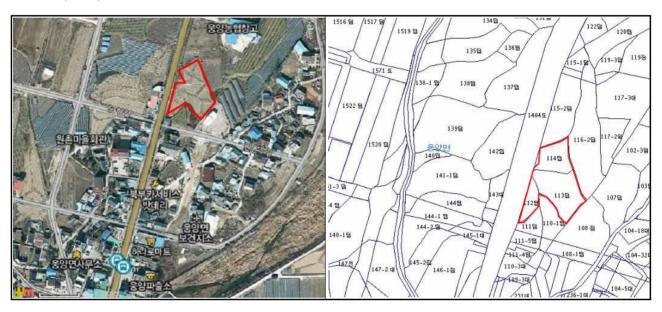
- 위 최: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, 113, 114번지
- 사업기간: 2017.7. ~ 12.
- 매입면적: 2,076m² (토지소유자: 조가매)
- 매 입 비: 300백만원(군비)
- 주요기능: 웅양면 119안전센터 건립
 - 화재의 초기대응과 응급환자의 적기 구조 구급
 -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

3. 취득재산의 세부내역

(단위:m²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	재	산 의	표 시		コスカオ	취득	취득사유	비고
丁亚	종별	소	재	지	지목	면 적	기준가격	시기	커득사파	미프
계			3필ズ			2,076	88,370			
		웅양면	노현대	리 112	답	349	15,077		웅양권역	
취득	토지	웅양면	노현대	리 113	답	1,094	45,948	2017	119안전센터	
		웅양면	노현대	의 114	답	633	27,345		건립	

4. 위 치 도



②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

1. 제안이유

○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·특산물 판매 및 친환경 교육을 위한 하천환경교육 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.

2. 취득개요

○ 사업기간: 2017.1. ~ 2019.12.(3년)

○ 사 업 비: 290백만원

○ 사업규모: 1,451 m²

○ 사업내용: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

3. 취득재산 세부내역

(단위:m², 천원)

구분	재산	재 산 의 표	시		기준가격	취득	취득 사유	재 산
丁亚	재산 종별	소 재 지	지목	면적	ハモバタ	시기	사유	소유자
계		3필지		1,451	290,200			
		거창읍 가지리 188-1	전	897	179,400	2017	기건창	조순감
취득	토지	거창읍 가지리 188-2	전	378	75,600	2017	하천환경 교육센터	조순감
		거창읍 가지리 187	답	176	35,200	2017	조성	형미생

4. 위 치 도



③ 군유임야 매각

1. 제안이유

○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군유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무허가 축사(양계장)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.

2. 처분개요

○ 위 치: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77-14, 1477-15

○ 처분면적: 3,300 m²

○ 기준가격: 11,710천원

3. 처분재산 세부내역

(단위: m², 천원)

7 11	ᆌᆀス버	재산의	표시		- 기조기가	
구분	재산종별	소 재 지	지목	면적	기준가격	
계		2필지		3,300	11,710	
매각	토지	신원면 덕산리 1477-14	목장용지	2,411	8,607	
매각	토지	신원면 덕산리 1477-15	목장용지	889	3,103	

4. 위 치 도



4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(변경)

1. 제안이유

○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을 위해 2016. 11. 9일 제3차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토지소유 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다른 부지를 매입코자 함.

2. 취득개요

- 사업기간: 2017.1. ~ 2018.12.(2년)
- 사 업 비: 1,900백만원(국비 500, 도비 150, 군비 1,250)
- 사업규모: 4,066 m²(농기계보관창고 1동, 운영사무실 1동)
- 사업내용: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부지 매입

3. 취득재산 세부내역

○ 당 초

(단위:m²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	재 ?	산 의	표 시		기준가격	취득	취득	재 산
丁亚	종별	소	재	지	지목	면 적	ノルモノイベ	시기	사유	소유자
계		2필지				3,438	50,539			
치디	E 7]	위천면	장기리	190	답	1,679	24,681	2017	농기계임대사업소	강채희
취득	토지	위천면	장기리	191	답	1,759	25,857	2017	신설부지 매입	강채희

○ 변 경

(단위:m², 천원)

그브	쟇살		재 ?	산 의 포	E 시		기준가격	췼듥	취등 사유	쟁 , 삵
구분	종별	소	재	지	지목	면 적	ハモバタ	시기	사유	<u> </u>
계			1필지			4,066	65,056			
취득	토지	위천면	장기리	269-9	답	4,066	65,056	2017	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	강승희

4. 위 치 도



5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(변경)

1. 제안이유

○ 거창읍 김천리 군유지(237-16)인근 237-9번지를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, 토지소유자와 영업세입 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를 현 보건소 내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취득개요

○ 위 치: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

○ 사업기간: 2017. 8. ~ 2018. 6.

○ 사업규모: 500㎡ (안심센터, 쉼터, 가족카페)

○ 사 업 비: 1,377백만원(국•도비 726, 군비 651)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군 비	비고
당 초	1,191,000	600,000	75,000	516,000	
변경 후	1,377,320	645,154	80,644	651,522	
증액금액	186,320	45,154	5,644	135,522	

3. 취득재산 세부내역

○ 당 초

(단위:m², 천원)

재산 종별		재	산 의	표 시		コスカオ	취득	취득사유	재 산
종별	소	재	지	지목	면 적	기준가격	시기		소유자
토지	거창읍	김천리	237-9	대	331	104,265	2017	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	이귀순
건물	거칭 237-	습 김 -9, 23	천리 37-16	대	530	991,000	2018	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	거창 군수

○ 변 경

(단위:m², 천원)

재산 종별 건물 7		재 ረ	산 의 표	. 시		기준가격	취득	취득사유	재 산	
종별	소	재	지	지목	면 적	기판기역	시기	게득사대	소유자	
건물	거창읍	송정리	332-3	대지	500	2,754	2018	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	거창 군수	

4. 위 치 도



①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

가. 안전 불감증과 소방 업무의 증가 등 농촌지역의 소방사각 지역을 해소하고 소방 골든타임 내 재난·재해, 구급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센터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됨

2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

- 가. 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또한 친환경 등 하천환경 인식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는 현실로 교육센터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,
- 나. 조성사업 부지 위치가 자동차운전 학원 옆이고 진입도로가 협소하는 등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진 과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③ 군유임야 매각

- 가. 현재 목장용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이 건 부지 내에 무허가 축사가 건축되어 있음
- 나.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면 축산 농가는 이 토지를 취득하 여야 할 상황으로
- 다. 축산농가의 민원해소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되므로 매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④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(변경)

- 가.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또한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가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에는 매우 유용하다고 사료되며
- 나. 사업 추진 시 주변여건 진입로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대상지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한 추진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음.

수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(변경)

- 가. 치매안심센터 건립 부지는 2017. 9. 13일 제227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으로 승인 받은바 있으나
- 나. 사유지 매입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대상 지를 변경한 경우로
- 다. 변경된 부지는 현재 보건소 부지 내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
- 라. 현재 보건소 부지 내 주차장이 넓지 않은데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 기존 주차장 축소뿐 만 아니라 추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- 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30호

─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── 심 사 보 고 서 ──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요구이유

○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(2016.1.1.~2017.12.31.) 만료로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 설 명: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나. 위 치: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

다. 사업내용: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

라. 위탁대상 사무

-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
- 다문화가족 교육사업과 정착지원사업
-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- 마. 재계약 방법: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

- 2017. 9. 28. 심의결과 재계약 적결
- 바. 재계약 단체: 거창기독청년회 / 이사장 표정숙
- 사. 재계약 기간: 2018. 1. 1 ~ 2019. 12. 31. / 2년
- 아. 소요예산
 -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
 - -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, 동법 제16조
 - 「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」제20조
 -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

- 가.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, 이들 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들의 2세들도 차별없는 교육 등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
- 나.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문화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34호

─ 거창승강기 R&D센터(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) 출연안 ─ **스 심 사 보 고 서** —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따라,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강기 시험·인증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거창승강기R&D센터 시험·인증 운영체계 활성화를 통해 승강기 허브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출연개요

가. 근거법령

- ○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38조 및 제41조
- ○「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」제5조 및 제14조
- 거창승강기R&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3조(2013.12.20)

나. 대 상: 한국산업기술시험원(거창승강기R&D센터)

다. 사 업 비: 100백만원(군비)

○ 2018년 예산편성 요구사항

(단위:백만워)

사업기간	2017년	2018년		재	원	별	
가입기신	예산액	요구액	계	국 비	도 비	군 비	민 간
2018년	-	100	200			100	100

라. 사업내용

- 승강기 시험·인증 업무 활성화
 - 거창승강기R&D센터 시험실 작업·연구환경 개선
 - 테스트타워 시설 환경안전 개선
 - 승강기 시험인증관련 세미나 개최, 기술자료 배포
 - 기업지원용 시험·인증업무 지그제작, 재료구입
 - 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장비 부대시설 구축, 장비 업그레이드 교정
 - 시험인증분야 신규 사업 개발
- 거창승강기밸리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
 - 승강기밸리 홍보/마케팅 팜플렛 제작·배포
 - 승강기 테스트타워를 활용한 밸리 홍보

- 가.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
- 나.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창승강기 산업을 국·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35호

_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____ - 심 사 보 고 서 ___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제안이유

○ 201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·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출연개요

가. 근거 법령: 「지방세기본법」제 152조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1조

나. 대 상: 한국지방세연구원(대표 공석)

다. 사 업 비: 3.7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
○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

(단위:천원)

사업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		재	원	별	
/[합기선	예산액	요구액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 타
2017년	3,200	3,700	3,700			3,700	

라. 사업내용

○ 지방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,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과제 선정, 연구 수행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이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,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음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의안번호 제2017 - 136호

─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─ - **심 사 보 고 서** 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7. 10. 23.

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11. 3.

2. 제안이유

○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.

3. 출연개요

가. 근거 법령: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나. 대 상: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(대표 양동인)

다. 사 업 비: 665,0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
○ 2018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7년	2018년		재	원	별		
^[합기신	예산액	요구액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	타
2018년	665	665	665			665		

- 가. 「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
- 나. 거창군 인구 유지는 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이 크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